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3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4.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II . 제안이유

-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동북아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 위함.

III . 주요내용

1. 학생 대상 양국 언어·문화·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교원·학부모 연수, 학술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3. 기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활용 지원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교류·협력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9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교류·협력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폭 넓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994년 6월 중국 북경시 교육위원회와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외국 유수의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7개국 7개 기관으로 학생 및 교사교류, 학교간 자매결연 활성화, 각국의 교육제도 벤치마킹, 언어연수 프로그램 공유 등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교육 교류·협력 MOU 체결기관 현황

연번	MOU 체결기관	체결일	교류 내용	실적
1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	1994. 6.	상호방문 교포자녀초청기술교육 서울-북경 학생체육대회	▷ 방문(10회) ▷ 초청(9회)
2	러시아 (모스크바시교육청)	1995. 5.	상호방문 교포자녀초청 기술교육	▷ 방문(8회) ▷ 초청(9회)
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교육청)	1995. 5.	상호 방문, 교사연수 컴퓨터지원	▷ 방문(4회) ▷ 초청(5회)

			교포자녀초청기술교육	
4	스웨덴 (국립교육청)	2006. 5.	상호 방문	▷ 방문(2회) ▷ 초청(2회)
5	몽골 (울란바타르시청)	2006.10.	상호 방문, 교사연수 컴퓨터지원 교포자녀초청기술교육	▷ 방문(5회) ▷ 초청(5회)
6	캐나다 (캘거리교육청)	2008.10.	상호 방문	▷ 방문(3회) ▷ 초청(5회)
7	프랑스 (파리시교육청)	2015. 4.	학생 및 교사 교류 학교간 국제자매결연 체결 상대국 언어교육 아틀리에를 통한 문화교류	▷ 초청(2회) ▷ 방문(2회)

- 서울시교육청은 하얼빈시교육국과의 MOU체결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 하얼빈시교육국을 방문하여¹⁾ 한-중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자원의 공유, 하얼빈시 조선족학교의 발전과 전통 문화 보전을 위한 지원, 서울시 학생들의 중국어와 중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등 MOU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 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 언어교육 (중국어,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② 한·중 문화교류 및 동북아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자매학교결연, 수학여행, 유학 등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 ④ 교원·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⑤ 연수단체 상호 왕래, ⑥ 학술 교류 동아리 구축 ⑦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활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번에 중국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 MOU가 체결되면 서울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이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동북아 역사 교육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2018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체험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답사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서울 교육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 이전에 MOU 체결 주체 상호간에 동 MOU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사전 공유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